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 租税特例制限法施行規則 [別紙第64号の2書式] <改正2024年3月22日>

(5쪽 중 제1쪽)
(全5ページ中1ページ)

관리 번호	
管理 番号	

()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기한 후() 신청서
()年帰属勤労奨励金・子ども奨励金
定期() 期限後() 申請書

- ※ 제4쪽,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쪽) ②가구원, ④전세금 명세, (2쪽) ⑤충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3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 (Ⅰ·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4페이지, 5페이지의作成方法を参照して記入し、[] 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1페이지) ②世帯員, ④伝貰の明細, (2페이지) ⑤給与総額等の記入欄に書ききれない場合は (3페이지) 勤労奨励金・子ども奨励金申請書に付属する明細書 (Ⅰ・Ⅱ) に記入してください.

① 신청 자 ① 신청 인	① 성명 ① 氏名	② 주민등록번호 ② 住民登録番号
	③ 주소 ③ 住所	
	④ 휴대전화 ④ 携帯電話番号	⑤ 유선전화 ⑤ 固定電話番号
		⑥ 전자우편 ⑥ 電子メールアドレス

② 가구 원 (신청자 제외) ② 世帯 員 (申請人 を除く)	⑦ 관계 ⑦ 関係	⑧ 성명 ⑧ 氏名	⑨ 주민등록번호 ⑨ 住民登録番号	⑦ 관계 ⑦ 関係	⑧ 성명 ⑧ 氏名	⑨ 주민등록번호 ⑨ 住民登録番号
			-			-
			-			-

- ※ ②가구원에는 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②世帯員の欄には前年度12月31日時点の世帯全員を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欄に書ききれない場合は3ページに記載)

③ 신청자 격 ③ 신청 자격	Q1. 가구 유형 Q1. 世帯類型	(단독·홀벌이·맞벌이) (単身世帯・片働き世帯・共働き世帯)	
	Q1-1.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 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Q1-1. 前年度12月31日時点で、世帯員に配偶者、満18歳未満の扶養する子、住民登録票上同居する満70歳以上の直系尊属はいませんでしたか?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직계존속(만 70세 이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扶養する子(満18歳未満)、直系尊属(満70歳以上)は年間所得金額が100万ウォン以下であること	예 [] (→단독가구) (→Q2-1) はい [] (→単身世帯) (→Q2-1) 아니오 [] (→Q1-2) いいえ [] (→Q1-2)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충급여액 등” 이 둘 다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Q1-2. 配偶者がいて、申請人本人及び配偶者の前年度「給与総額等」がそれぞれ300万ウォン以上ですか? * 충급여액이란 근로(상용,일용),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함 * 給与総額とは労働(常勤、日雇い)、事業、宗教人所得の合計額を指す	예 [] (→맞벌이가구) (→共働き世帯) はい [] (→共働き世帯) 아니오 [] (→홀벌이가구) いいえ [] (→片働き世帯)	

Q1-3.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추가 질문)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Q1-3. (子ども奨励金申請人の場合の追加質問) 前年度12月31日時点の世帯員に満18歳未満の扶養する子はいましたか? いた場合、何人いますか?		없음 [] (→자녀장려금 대상아님) いない [] (→子ども奨励金の対象ではない) 있음 [] (명) いる [] (名)						
Q2. 소득 요건 Q2. 所得要件								
Q2-1.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 “이 아래 가구 유형별(Q1. 가구 유형에서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입니까? Q2-1. (勤労奨励金申請人の場合) 申請人と配偶者の前年度の「年間所得合計額」が下記の世帯類型別(Q1. の世帯類型で確認) 総所得の基準金額未満ですか? <table><tr><td>단독 가구(2천 2백만원)</td><td>홀벌이 가구(3천 2백만원)</td><td>맞벌이 가구(3천 8백만원)</td></tr><tr><td>単身世帯 (2千2百万ウォン)</td><td>片働き世帯 (3千2百万ウォン)</td><td>共働き世帯 (3千8百万ウォン)</td></tr></table> *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확인 * 総所得とは労働、事業、宗教人、利子、配当、年金、その他の所得の合計額を指し、詳しい内容は4ページで確認		단독 가구(2천 2백만원)	홀벌이 가구(3천 2백만원)	맞벌이 가구(3천 8백만원)	単身世帯 (2千2百万ウォン)	片働き世帯 (3千2百万ウォン)	共働き世帯 (3千8百万ウォン)	예 [] (→Q3) はい [] (→Q3)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いいえ [] (→申請対象ではない)
단독 가구(2천 2백만원)	홀벌이 가구(3천 2백만원)	맞벌이 가구(3천 8백만원)						
単身世帯 (2千2百万ウォン)	片働き世帯 (3千2百万ウォン)	共働き世帯 (3千8百万ウォン)						
Q2-2.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홀벌이·맞벌이 가구 중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입니까? Q2-2. (子ども奨励金の申請人の場合) 片働き・共働き世帯のうち、申請人と配偶者の前年度の「年間所得合計額」が7千万ウォン未満ですか?		예 [] (→Q3) はい [] (→Q3)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いいえ [] (→申請対象ではない)						
Q3. 재산 요건 Q3. 財産要件								
Q3.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Q3. 前年度6月1日時点で申請人と②世帯員が所有している土地・建物・住宅・自動車・預金・チョンセ保証金等の財産の合計額が2億4千万ウォン未満ですか?		예 [] はい []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いいえ [] (→申請対象ではない)						

※ ③ 신청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申請資格の具体的な基準については4ページで確認できます。

④ 전세금 명세 ④ 伝賃保証金の明細	⑩ 임차인 ⑩ 賃借人		⑪ 임대인 ⑪ 賃貸人		⑫ 소재지 ⑫ 所在地	⑬ 종류 ⑬ 種類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⑭ 伝賃保証金 (賃借保証金)	⑮ 계약기간 ⑮ 契約期間	⑯ 무상임차 ⑯ 無償賃借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성명 氏名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住民(事業者) 登録番号		주택 住宅	상가 등 商店等			
						[]	[]			
						[]	[]			
						[]	[]	원 ウォン	~	[]
						[]	[]	원 ウォン	~	[]
						[]	[]	원 ウォン	~	[]

※ ④ 전세금명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④ 伝賃保証金の明細の具体的な基準については4ページで確認できます。(記入欄に書ききれない場合は3ページに記載)

⑤ 총 급 여액 등 ⑤ 賃金 総額 等	구분 区分	①⑦ 소득자 ①⑦ 所得者	①⑧ 상호·단체명 ①⑧ 商号・団体名		①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①⑨ 事業者登録番号・固有番号		②⑩ 총급여액 등 ②⑩ 賃金総額等		
	근로 소득 給与 所得	신청자 申請人					원 ウォン		
		배우자 配偶者					원 ウォン		
	종교인 소득 宗教人 所得	신청자 申請人					원 ウォン		
		배우자 配偶者					원 ウォン		
	사업 소득 事業 所得	②① 소득 자 ②① 所得 者	②② 원천징 수여부 ②② 源泉徴 収の有無	②③ 상호 ②③ 商号	②④ 사업자등 등록번호 ②④ 事業者登 録番号	②⑤ 총수입 금액 ②⑤ 収入総額	②⑥ 업 종 ②⑥ 業種 ②⑦ 업종코드 ②⑦ 業種コード	②⑧ 조정률 ②⑧ 調整率	②⑨ 총급여액 등 ②⑨ 賃金総額等
		신청자 申請人	여 有 []	부 無 []		원 ウォン		%	원 ウォン
		배우자 配偶者	여 有 []	부 無 []		원 ウォン		%	원 ウォン
	③⑩ 합 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③⑩ 合計 (夫婦合算賃金総額等)							원 ウォン	
	* ②⑥ 업종별 조정률은 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⑥ 業種別の調整率については5ページで確認できます。								

⑥ 신청금액 계산 ⑥ 申請金額 の計算	구 분 区 分		근로장려금 勤労奨励金	자녀장려금 子ども奨励金	
	③①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③① 勤労奨励金算定表及び子ども奨励金算定表によって算定した金額		원 ウォン	원 ウォン	
	감 액 금 액 減 免 金 額	③②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③② 財産が1億7千万 ウォン以上	산정금액의 50% 금액 算定金額の50%減免	원 ウォン	원 ウォン
		③③ 기한 후 신청 ③③ 期限後申請	(재산합계 1억 7천만원 미만) ③① × 5% 금액 (財産合計が1億7千万ウォン未満) ③① × 5%の金額	원 ウォン	원 ウォン
			(재산합계 1억 7천만원 이상) (③①-③②) × 5% 금액 (財産合計が1億7千万ウォン以上) (③①-③②) × 5%の金額	원 ウォン	원 ウォン

	㉔ 자녀세액공제 차감 ㉔ 子ども税額控除 の差引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所得税算出税額から控除された子ども税額控除金額		원 ウォン
㉕ 신청금액 (㉑-㉒-㉓-㉔) ㉕ 申請金額 (㉑-㉒-㉓-㉔)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算定金額から減額金額を差し引いた金額	원 ウォン	원 ウォン
* ㉑ 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㉑ 奨励金算定表については国税庁ホームページで確認できます。				

㉗ 수령계좌 신고 ㉗ 受取口座の申告	㉘ 금융회사등 ㉘ 金融会社等		㉙ 계좌번호 ㉙ 口座番号	
㉘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 ㉘ 決定通知書の 電子データで の受取申請	동의 [] 비동의 [] 同意する [] 同意しない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電子データでの受取を申請すると、勤労・子ども奨励金決定通知書が国税庁ホームページにて交付され、別途郵送ではなく電子データで発行されたことが携帯電話に通知されます。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以上、事実どおりに記入して「租税特例制限法」第100条の6及び第100条の30に基づき勤労奨励金と子ども奨励金を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자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세 무 서 장 귀하

税 務 署 長 殿

※ 첨부서류 (해당란에 √) ※ 添付書類 (該当する欄に√印)	1. 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1. 所得を証明する資料: 勤労・事業所得の支給確認書 (国税庁の告示書式を参照) 等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2. 財産を証明する資料: 賃貸借契約書の写し、賃貸借確認書[]、分譲契約書の写しと分譲代金・清算金の納入領収書等写し []	수수료 없 음 手数料 なし
--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
勤労奨励金・子ども奨励金申請書に付属する明細書(Ⅰ)

※ 1쪽 ②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1ページの②世帯員欄に書ききれない場合、以下の欄に記入してください。

②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関係	⑧ 氏名	⑨ 住民登録番号	⑦ 関係	⑧ 氏名	⑨ 住民登録番号
가구원			-			-
② 世帯員			-			-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勤労奨励金・子ども奨励金申請書に付属する明細書(Ⅱ)

※ 1쪽 ④ 전세금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1ページの④伝賃保証金欄に書ききれない場合は以下の欄に記入し、[]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④ 전세금명세 ④ 伝賃保証金の明細	⑩ 임차인 ⑩ 賃借人		⑪ 임대인 ⑪ 賃貸人		⑫ 소재지 ⑫ 所在地	⑬ 종류 ⑬ 種類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⑭ 伝賃保証金 (賃借保証金)	⑮ 계약기간 ⑮ 契約期間	⑯ 무상임차 ⑯ 無償賃借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성명 氏名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住民(事業者) 登録番号		주택 住宅	상가 등 商店等			
						[]	[]	원 ウォン	~	[]
						[]	[]	원 ウォン	~	[]
						[]	[]	원 ウォン	~	[]
						[]	[]	원 ウォン	~	[]

무상임차 사실 확인
無償賃借事実確認書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1ページの⑯無償賃借の事実がある場合に記入してください。

임차인(세입자) 賃借人(借主)		관계 関係	임대인 賃貸人			종류 種類		소재지 所在地	무상사용기간 無償使用期間	면적(㎡) 面積(㎡)
성명 氏名	주민등록 번호 住民登録 番号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 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주택 住宅	상가등 商店等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実際の契約どおりに事実を記入したことを確認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임대인 성명
 賃貸人の氏名

※ 2쪽 ⑤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2ページの⑤賃金総額等の欄に書ききれない場合は、以下の欄に記入し、[]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ます。

⑤ 총급여 액 등 ⑤ 賃金総 額等	근로 소득 給与 所得	⑰ 소득자 ⑰ 所得者		⑱ 상호・단체명 ⑱ 商号・団体名		⑲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⑲ 事業者登録番号・固有番号		⑳ 총급여액 등 ⑳ 賃金総額等			
		신청자 申請人[]	배우자 配偶者[]					원 ウォン			
		신청자 申請人[]	배우자 配偶者[]					원 ウォン			
		신청자 申請人[]	배우자 配偶者[]					원 ウォン			
	종교인 소득 宗教人 所得	신청자 申請人[]	배우자 配偶者[]					원 ウォン			
		신청자 申請人[]	배우자 配偶者[]					원 ウォン			
		신청자 申請人[]	배우자 配偶者[]					원 ウォン			
	사업 소득 事業 所得	⑳ 소득자 ㉑ 所得者		㉒ 원천징수 여부 ㉒ 源泉徴収の有無		㉓ 상호 ㉓ 商号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㉔ 事業者 登録番号	㉕ 수입금액 ㉕ 収入総額	㉖ 업 종 ㉖ 業種 ㉗ 업종코드 ㉗ 業種コード	㉘ 조정률 ㉘ 調整率	㉙ 총급여액 등 ㉙ 賃金総額等
		신청자 申請人 []	배우자 配偶者 []	여 有 []	부 無 []			원 ウォン		%	원 ウォン
		신청자 申請人 []	배우자 配偶者 []	여 有 []	부 無 []			원 ウォン		%	원 ウォン
신청자 申請人 []		배우자 配偶者 []	여 有 []	부 無 []			원 ウォン		%	원 ウォン	

작성 방법 作成方法

② 가구원 ② 世帯員

1. 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前年度12月31日時点で以下に該当する世帯全員を記入してください。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1) 配偶者ただし、配偶者が年度内に死亡した場合は、死亡日の前日時点の状況に合わせて記入してください。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2) 扶養する子 (以下の要件を参照)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申請人(配偶者を含む)の子・同居する養子、住民登録票上の同家族で、父母がいらないか、もしくは父母が扶養する能力がないために申請人(配偶者を含む)が実質的に扶養する兄弟姉妹又は孫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年間所得金額が100万ウォン以下であること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満18歳未満であること(当該所得税課税期間の直前年度に18歳未満に該当する日がある場合を含む)。ただし、扶養する子が重度障がい者で、申請人(配偶者を含む)と同じ住所又は居所に居住しているか、又は疾病等で一時退去した場合は年齢を制限しません。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ただし、扶養する子が当該所得税課税期間の直前年度中に死亡したか、又は障がいが回復した者に対しては死亡日(回復日)の前日時点の状況に合わせて記入してください。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3) 申請人(配偶者を含む)と同じ住所又は居所に居住している直系尊属・直系卑属及びその配偶者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2. ⑦ 関係欄には申請人との関係[配偶者、子、父母(配偶者の父母を含む)、孫、祖父母、その他]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③ 신청자격 ③ 申請資格

1. 공통

1. 共通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1) 以下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居住者は申請資格がありません。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当該所得税の課税期間中に「付加価値税法施行令」第109条第2項第7号*に該当する事業を行っている者及びその配偶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付加価値税法施行令」第109条第2項第7号に該当する事業の種類: 弁護士、海事補佐人、弁理士、司法書士、公認会計士、税務士、経営指導士、技術指導士、不動産鑑定士、損害鑑定人、通関士、技術士、建築士、水先人、測量士、公認労務士、医師、漢方医、薬剤師、漢方薬剤師、獣医、その他これに類似したサービス業で、企画財政部令で定めるもの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当該所得税の課税期間終了日時点で大韓民国籍を保有していない者ただし、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除く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大韓民国籍を持っている者と婚姻している者
- 大韓民国籍の扶養する子がいる者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当該所得税の課税期間中に他の同居者の扶養する子である者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②가구원의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世帯員の財産の合計額」は申請人と②世帯員の前年度6月1日に保有していた財産を基準に判断します。

-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土地・建物・住宅、乗用車（営業用自動車、ワゴン車、貨物自動車を除く）、伝賃保証金（賃借保証金）、現金、預金・積立預金等金融財産（普通預金、定期預金、貯蓄預金等要求払預金の場合は当該所得課税期間の終了日が属する年度の3月2日から6月1日までの期間中の1日平均残高）、株式・債券等有価証券、分譲権、入居権、ゴルフ会員権等取得税の課税対象である会員権の価額が全部含まれます。
-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ローン等債務額は差し引きません。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전년도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5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3) 申請人と配偶者の「年間所得の合計額」は、前年度の給与所得（賃金総額）の合計額、事業所得に業種別調整率〔（20～90％）、5ページ参照〕を掛けた金額、宗教人所得（総収入金額）の合計額、その他の所得金額（宗教人所得を除く）、利子・配当・年金所得（収入総額）の合計額を合わせて（ただし、非課税所得は除く）計算します。

2. 근로장려금

2. 勤労奨励金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1) 当該所得税の課税期間終了日の時点で継続して勤務している常勤（日雇いを除く）で、月平均の勤労所得が500万ウォン以上の者（配偶者を含む）は申請資格がありません。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백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백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2) 申請人と配偶者の「年間所得の合計額」が世帯別総所得基準金額（単身世帯の場合は2千2百万ウォン未満、片働き世帯の場合は3千2百万ウォン未満、共働き世帯の場合は3千8百万ウォン未満）を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

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이. 単身世帯: 配偶者、扶養する子及び以下の要件を満たす直系尊属がいない世帯

* 직계존속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直系尊属の要件: ① 年間所得金額の合計額が100万ウォン以下であること

②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② 住民登録票上の同居家族で、当該申請人の住所若しくは居所で実質的に生計を共にしていること

③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③ 70歳以上であることただし、重度障がい者である直系尊属が申請人（配偶者を含む）と同じ住所又は居所に居住しているか、疾病等で一時退去した場合は年齢を制限しない。

나.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片働き世帯: 配偶者の前年度の賃金総額が300万ウォン未満の世帯、配偶者なしで扶養する子又は上記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直系尊属がいる世帯

다.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ハ. 共働き世帯: 申請人及び配偶者の前年度の賃金総額等がそれぞれ300万ウォン以上の世帯

3. 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7천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3. 子ども奨励金: 申請人と配偶者の「年間所得合計額」が総所得基準額（7千万ウォン未満）を満た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

④ 전세금 명세

④ 伝賃保証金の明細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 前年度6月1日時点で申請人と②世帯員が賃借した住宅・商店などがある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2. 주택의 전세금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2. 住宅の伝賃保証金は「所得税法」第99条の基準価格(基準価格がない場合、「地方税法」第1条の価格標準額)を適用して評価した金額の60%以内で国税庁長が決めて告示する金額と実際の伝賃保証金(賃借保証金)とを比較して少ない金額の方を記入してください。[実際の伝賃保証金(賃借保証金)を記入した場合は賃貸借(チョンセ)契約書の写しを提出してください]
ただし、申請人とその配偶者の直系卑属(その配偶者を含む)から賃借した住宅は実際の伝賃保証金との比較なしに「所得税法」第99条の基準価格を適用して評価した金額(基準価格がない場合は「地方税法」第1条の価格標準額)を記入してください。
3.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3. 申請人と②世帯員が前年度6月1日時点で他人の住宅や店舗等を賃借した事実がある場合、賃借した建物別に記入してください。賃貸人が共同名義となっている場合は、代表として1名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店舗等(住宅を除く)を賃借した場合は、必ず賃貸借契約書の写し等の関連する証明資料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⑤ 총급여액 등
⑤賃金総額等

1. 근로소득: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 給与所得:事業主に雇われて労働を提供することによって受け取る月給、給料、報酬、歳費、歳費、賃金、賞与、手当とこれに類似する給与
 2.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 宗教人所得:宗教関連の従事者が宗教儀式を行う等、宗教に関わる活動に関して宗教団体から受け取った所得
 3. 사업소득: ㉔수입금액에 제5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3. 事業所得:㉔収入金額に5ページの業種別調整率を適用した金額
 4.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4. 事業者が国税庁に提出した所得資料と異なっているか、又は提出漏れがあった場合、給与・事業所得支給確認書等所得を証明する資料は別途作成して提出してください。
 5. ㉔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의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㉔ 源泉徴収の有無の欄は源泉徴収した人的サービス業の事業所得と源泉徴収した奉仕料に関する事業所得を指し、医療保険サービスにより発生する事業所得は該当しません。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 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賃金総額等から除外される所得: 非課税所得、申請人本人及び配偶者の直系尊属・卑属から受け取った源泉徴収の対象となる事業所得及び勤労所得、事業者登録証又は固有番号証を交付又は付与されなかった者から受け取った勤労所得、「法人税法」に基づき処分された勤労所得、事業者登録をしていない者の事業所得(ただし、人的サービスの供給から発生する所得で、事業者登録証又は固有番号証を交付又は付与された事業者から受け取った所得は除く)、「所得税法」第45条第2項に基づく不動産賃貸業によって発生する所得

작성 방법
作成方法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 事業所得関連の業種別調整率

업종별 분류 業種別分類	업 종 業種	조정률 調整率
가 イ.	도매업 卸売業	20%
나 ロ.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農業・林業及び漁業、小売業	25%
다 ハ.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鉱業、自動車及び部品販売業、その他の業種に該当しない事業	30%
라 ニ.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형주점업 제외), 부동산판매업 製造業、飲食店業（高級・接待飲食店営業を除く）、不動産売買業	40%
마 ホ.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電気・ガス・蒸気及び水道事業、建設業	45%
바 ヘ.	고급·유형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高級・接待飲食店営業、宿泊業、運輸業、下水・廃棄物処理・原料リサイクル業及び環境復元業、出版・映像・放送 通信業	55%
사 ト.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商品仲介業、コンピュータ及び情報サービス業、保険及び年金業、金融及び保険関連サービス業	60%
아 チ.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金融業、芸術・スポーツ及びレジャー関連サービス業、修理及びその他個人向けサービス業（人的サービスを を除く）	70%
자 リ.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不動産関連サービス業、専門・科学及び技術サービス業、事業施設管理及び事業支援サービス業、教育サー ビス業、保険業及び社会福祉サービス業	75%
차 ヌ.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不動産賃貸業、賃貸業（不動産を除く）、人的サービス、世帯内雇用活動	90%

⑥ 신청금액 계산
⑥ 申請金額の計算

- ③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및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및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 ③ 算定金額の欄は勤労奨励金算定表(「租税特例制限法施行令」第100条の6第5項及び別表11)及び子ども奨励金算定表(「租税特例制限法施行令」第100条の29第1項及び別表11の2)に基づき計算されます。
- ②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② 財産が1億7千万ウォン以上の欄には申請人と世帯員が所有している土地・建物・住宅・自動車・預金等財産の合計額が1億7千万ウォン以上の場合、算定金額の50%に該当する金額を記入してください。

3. ㉓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5%를 기재합니다.
3. ㉓ 期限後申請の欄には申請期間終了日の翌日から6カ月以内に期限後申請する場合、算定金額の5%を記入してください。
4. ㉔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4. ㉔ 子どもの税額控除差引の欄には「所得税法」第59条の2及び第61条に基づき、所得税の算出税額から実際に控除された子ども税額控除金額に該当する金額を記入してください。

신청 시 유의사항 申請時の留意事項

1.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1. 申請期間に勤労・子ども奨励金を申請しない居住者は申請期間終了日の翌日から6カ月以内に期限後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期限後に申請する場合は勤労・子ども奨励金の算定金額の100分の95に該当する金額が支給されます。
2.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財産価額が1億7千万ウォン以上の場合、算定された勤労・子ども奨励金の100分の50に該当する金額が支給されます。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勤労・子ども奨励金の申請要件に関する事項を故意又は重大な過失、詐欺若しくはその他の不正な行為によって事実と異なって申請した場合は勤労・子ども奨励金の支給が制限されることがあり、「租税犯処罰法」による処罰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す。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를 대상 사업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申請人又は配偶者が「所得税法」第70条、第74条に基づく総合所得税課税標準確定申告の義務がある場合は、勤労・子ども奨励金の支給決定日まで必ず総合所得税申告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し、総合所得金額が150万ウォン以下の者で単純経費率の対象事業者又は2名以上から受け取った「所得税法」第73条第2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所得がある常勤労働者の場合は、総合所得税申告をしたものと見做します。
5.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5. 子ども奨励金は「所得税法」第59条の2に基づく子ども税額控除と重複して適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年末調整又は総合所得税を申告する際に子ども税額控除を受けた場合は、当該子ども税額控除の額を子ども奨励金から控除します)。
6. 근로·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 외의 계좌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통해 신고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6. 勤労・子ども奨励金の受領は同じ口座でのみ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したがって申請書に記載されている受取口座を勤労奨励金及び子ども奨励金口座の開設(変更/解約)申告書(別紙第64号の3書式)によって申告した場合等、2つ以上の口座が申告された場合は最後に申告した口座に支給されます。
-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 (留意事項) 最後の申請口座に口座を記載しなかった場合(現金申請)又は勤労奨励金及び子ども奨励金用の口座の開設・解約を申告した場合は現金で支給します。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金融取引情報の照会について: 国税庁では勤労奨励金・子ども奨励金の申請資格についての確認が必要な場合、「租税特例制限法」第100条の12及び第100条の31に基づき、申請人及び世帯員の金融取引情報を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その他の詳しい内容は国税庁ホームページ(www.hometax.go.kr)や住所地の管轄税務署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